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7. 2. 9(목) 14:00부터

배포

2017. 2. 8(수)

책임자

금융전략실
조재린 실장(3775-9034)

작성자

송윤아 연구위원(3775-9025)
최창희 연구위원(3775-9040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4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과 국회 정무위원회(위원장: 이진복), 국회입법조사처(처장: 이내영)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안전처와 중소기업청,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하는 「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」 정책토론회가 2월 9일(목)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됨.
 -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주제 「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·운영 방안」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지진위험과 해외 지진보험 운영사례를 검토한 후 지진보험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함.
 -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주제 「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」 발표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성 및 방안을 논의함.
 - 이후 학계, 국민안전처, 중소기업청, 금융당국,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됨.

〈 제1주제: 「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·운영 방안」 〉

상당 수준의 지진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진사고 보상 대책 미흡
-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

- 우리나라의 지진위험을 지진발생 가능성, 지진사고 대비, 지진사고 보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우리나라는 **상당한 수준의 지진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.**
 - 1978년 이후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하였지만, 국내 대부분의 시설물(93.2%)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이 없는 실정임.
 -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(민간), 풍수해보험(정책성), 재산종합보험(민간) 등이 있으며,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.6~5.8%에 불과함.

- 최창희 연구위원은 “**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**”고 주장함.
 - 구체적으로,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**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**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**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.**
 -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함.
 -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·일본식으로 **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**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·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 -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공적 지진보험 기관인 CEA(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)가,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운영함.
 - 더불어 풍수해보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 축소, **국가재보험 도입,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**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〈 제2주제: 「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」 〉

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은 재난취약계층이자 재난보험 사각지대

- 정부, 전통시장 상인에 경제력 수준별 화재보험료 차등 지원 필요

- 전통시장은 가연성 시설 및 재고자산, 노후화된 전기시설, 밀집형 구조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.
 - 2007~2015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건당 재산피해액은 1,300만 원으로 다중이용업소(470만 원)에 비해 약 2.8배 높고, 건당 사망자 수는 0.003명으로 다중이용업소(0.007명)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.

- 전통시장 화재는 화재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의 배상자력과 피해자의 복구자력 및 보험가입여력이 부족하여 피해상인의 경제적 재기는 물론 생존권을 위협함.
 - 특수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전통시장 화재는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많고 그 피해규모가 현저히 큰 데 반해, 원인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기 때문에 **배상자력 확보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활용하기 어려움.**
 - 다중이용업주나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.
 - 더불어 높은 화재위험도 및 역선택을 우려한 보험회사의 보수적 인수 전략과 시장상인의 보험가입여력 부족으로 인해 자기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가입률도 **26.6%에 불과함.**

- 송윤아 연구위원은 “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,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

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함.

- 전통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나 재난보험 사각지대임.
-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.

<별첨> 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